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

-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국회 통과 -
- 2025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예정 -
- 아동 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강화-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또한,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30일(금)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 입양절차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입양 특별법 주요내용>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①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고, 입양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하게 된다.

② 예비양부모 상담 및 교육,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게 된다.

③ 입양대상아동과 예비양부모간의 결연(matching)은 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④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⑤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사후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또는 연계한다.

⑥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25만여 건의 기록물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고,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 기록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로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⑦ 보건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에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국제입양법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의 국제입양 뿐만 아니라,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 모든 아동의 국제입양을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헤이그협약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이하 출신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이하 입양국)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상호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② 국제입양은 헤이그협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제입양대상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③ 국제입양 성립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통과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될 것으로,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헤이그협약이 비준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었다” 라고 언급하면서,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이해희 (044-202-3412)



- <붙임> 1. 법시행시 국내입양 절차 변화
2.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
3.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4. 입양 관련 통계

붙임1

법시행시 국내입양 절차 변화

① 입양대상 아동 결정·보호

절차	기존	개정
① 친생부모 상담	입양기관	지자체
② 입양대상 아동 결정	보호자의 입양 동의	지자체
③ 아동 보호	입양기관	지자체

② 예비양부모 심사

절차	기존	개정
① 신청	입양 기관	복지부 (보장원)
② 상담·가정조사		복지부 (위탁기관)
③ 교육		보장원 (위탁기관)
④ 적합성 결정		복지부 (위원회)

③ 아동-예비양부모 결연

절차	기존	개정
결연	입양기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④ 입시양육결정

가정법원 (신설)

⑤ 입양허가

가정법원 (현행 동일)

⑥ 사후관리

절차	기존	개정
사후관리	입양기관	복지부 (위탁기관)
정보공개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붙임2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

① 입양대상 아동 결정 · 보호

절차	수행기관
① 아동의 입양적합성 판단 (제4조)	아동 출신국 중앙당국
② 아동보고서 준비 (제4조 및 제16조)	아동 출신국 중앙당국

② 예비양부모의 입양신청

절차	수행기관
① 입양신청 (제14조 및 제5조 a항)	예비양부모 → 입양국 중앙당국
② 예비양부모 보고서 준비 (제15조)	입양국 중앙당국

③ 예비양부모 적격성심사 및 결연

절차	수행기관
①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 (제5조)	아동 출신국 중앙당국
② 아동-예비양부모 결연 (제16조)	아동 출신국 중앙당국
※ 양부모와 양 국가 간 입양절차 진행에 동의하고, 아동이 입양국에 입국하여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경우 입양 승인	

④ 아동의 이동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 가능

⑤ 입양 최종 결정

아동 출신국 가정법원

⑥ 효력 인정

체약국 간 효력 자동 인정 (제23조)

⑦ 사후관리

절차	수행기관
아동적응보고서 작성·점검 (제23조)	출신국과 입양국 협력

붙임3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 개 관

- (배경) ‘국제입양’ 명목의 아동매매, 약취의 우려가 있는 행태가 세계적으로 만연함에 따라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국제법체계 마련
- (협약체결) '93.5.29 채택, '95.5.1 발효, 현재 협약당사국 105개국
* 서명은 했으나 미비준: 대한민국('13.5.24 서명), 러시아, 네팔 등 3개국

□ 주요내용 : 전문 및 총 48조

- (원칙)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
- (입양의 효력) 입양국의 입양결정을 다른 체약국에서도 인정
- (입양의 절차)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책임으로 규정
 - (입양신청) 양친될 자가 본인 거소지의 중앙당국에 신청
 - (양부모 조사) 입양국 중앙당국이 입양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입양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아동 출신국에 송부
 - (입양결정) 출신국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원 및 입양적합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확보 및 입양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이동) 양부모가 아동과 함께 이동, 국가기관은 출입국과 이주 허가

□ 국제입양 담당기관

- (중앙당국) 체약국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나의 중앙국가기관을 중앙당국으로 지정
- (공적기관 또는 인가단체) 일정범위 내에서 중앙당국의 업무를 공적기관이나 인가단체(비영리기관)에 위임 가능

붙임4

입양 관련 통계

□ 연도별 입양현황 (단위: 명)

구분	계	2010년 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49,959	238,105	2,464	1,880	922	1,172	1,057	880	863	681	704	492	415	324
국내	81,532 (32.6%)	74,409 (31.0%)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226 (54.5%)	182 (56.2%)
국외	168,427 (67.4%)	163,696 (69.0%)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232 (47.1%)	189 (45.5%)	142 (43.8%)

□ 입양아동의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성별		연령				계	성별		연령		
		남	여	3월 미만	3월~1 세미만	1~3세 미만	3세 이상		남	여	1세 미만	1~3세 미만	3세 이상
2020	260	90 (34.6%)	170 (65.4%)	-	157 (60.4%)	80 (30.8%)	23 (8.8%)	232	192 (82.8%)	40 (17.2%)	-	225 (97.0%)	7 (3.0%)
2021	226	78 (34.5%)	148 (65.5%)	12 (5.3%)	121 (53.6%)	69 (30.5%)	24 (10.6%)	189	133 (70.4%)	56 (29.6%)	-	185 (97.9%)	4 (2.1%)
2022	182	67 (36.8%)	115 (64.2%)	-	97 (53.3%)	72 (39.6%)	13 (7.1%)	142	92 (64.8%)	50 (35.2%)	1 (0.7%)	139 (97.9%)	2 (1.4%)

□ 입양아동 발생 사유

(단위: 명)

연도	계	미혼모(부) 아동(혼외자포함)	유기아동	가족해체등
2020	492	447 (90.9%)	38 (7.7%)	7 (1.4%)
2021	415	355 (85.5%)	49 (11.8%)	11 (2.7%)
2022	324	279 (86.1%)	42 (13%)	3 (0.9%)

□ 입양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미 국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2020	232	156 (67.2%)	18 (7.8%)	19 (8.2%)	7 (3.0%)	17 (7.3%)	1 (0.4%)	3 (1.3%)	2 (0.9%)	9 (3.9%)
2021	189	126 (66.7%)	14 (7.4%)	17 (9.0%)	7 (3.7%)	11 (5.8%)	3 (1.6%)	3 (1.6%)	1 (0.5%)	7 (3.7%)
2022	142	99 (69.7%)	9 (6.3%)	10 (7%)	6 (4.2%)	2 (1.4%)	3 (2.1%)	5 (3.5%)	4 (2.8%)	4 (2.8%)